

승소사례

한영애 3집 및 5집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 권리확인 소송



문건영 변호사

가수 한영애씨의 3집 음반 <부서진 밤>과 5집 음반 <난·다>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권접권이 한영애씨에게 있다는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한영애씨는 작사와 작곡, 가창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로서 음반의 제작까지도 직접 해 왔다. 그녀는 자신이 예전에 창작한 곡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 곡들이 당시 녹음한 목소리로 다시 세상에 빛을 보게 하고 싶었다. 지인을 통해 확인해 보니, 몇몇 음반에 대한 온라인상의 권리(음반제작자의 저작권접권 중 일부)가 과거 음반사들 명의로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신탁되어 있었다. 한영애씨가 모르는 사이에 음반사들이 권리자로 행세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 협회는 2001년에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등의 권리를 신탁 관리하기 위해 생긴 곳인데, 설립 당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들 음반사들을 상대로 권리 확인 등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 2013년 4월이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2013년 11월에 받았고, 음반사들이 항소했지만 지난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사실조회를 해 보았지만, 음반사들이 권리를 신탁하면서 권리자임을 보여줄 만한 증거로서 제출한 것은 없었다. 법원은 한영애씨가 3집과 5집 음반의 음반제작자임을 인정했다.

위 판결은 3집 앨범에 대해, “원고(한영애)는 3집 음반제작계약에서, 원고가 3집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하여 제공하고, ○○음반회사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마스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음반을 제작하여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판매 수량에 따른 음반제작권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음반과 테이프의 원반 및 인쇄물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며 3집 음반에 수록될 곡의 작사, 작곡, 선곡, 가창, 녹음, 멀티테이프 제작, 편집, 마스터테이프 제작 등을 담당하였다”며 3집 앨범의 음반제작자는 원고라고 하였다.

5집 앨범에 대해서도, 원고가 5집 앨범의 기획, 작사, 작곡, 선곡, 이용허락, 가창, 녹음, 악단의 편

성 및 섭외, 녹음 및 편집, 홍보 등 대부분의 음반제작 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책임지고, 음반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음반 회사로부터 투자받아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며, 원고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그녀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법의 구체적 규율은 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자신의 분신과 같이 음원을 아끼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사장되었던 3집과 5집 앨범을 다시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떠한 형태의 창작물에 대해 이를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근거로는 두 가지가 제시된다. 하나는 대륙법적인 접근으로서, '저작자의 개성의 발현'으로서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물이 창작자의 인격의 표현이어서 저자와 '떨러야 떨 수 없는 관계'임을 전제로 한다. 다른 하나는 실용적 접근이다.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과 문화발전을 더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저작인접권이어서 정확히 말하면 저작권과는 다르다. 하지만 같은 취지에서 그 보호근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영애씨가 자신의 창작력을 쏟아 부어 만들어낸 앨범을 다시 출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금의 대중과 공유하게 된 것은 이 모든 취지에 부합한다.

정보통신 칼럼

‘인터넷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윤복남 변호사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란?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 이름으로 '*.love'를 만든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할까? 이와 같이 인터넷 분야의 정책에 관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에 관한 주제가 '인터넷 거버넌스'다. 원래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는 '통치(governing)'나 '정부(government)'와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다고 한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로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 분야에서의 통치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지만, 그 실체는 많이 다르다.

인터넷 거버넌스에는 고유한 역사가 있다. 애당초 인터넷 자체가 통치나 관리와는 친하지 않은 **자발적인 선택과 수용**의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미 국방부의 알파넷(ARPANET) 프로젝트를 학계, 엔지니어 및 사업자들이 상용화된 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유무선 국제전화 서비스가 각 국가간의 조약 및 협정에 의해 연결된 것과 비교하면, 인터넷은 그 출발점부터 달랐다.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vs. 위계형 거버넌스

국제적으로는 인터넷 연결을 위한 통신규약과 인터넷 주소체계 등에 관해서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나 ICANN(인터넷주소관리기구) 등 민간 국제기구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십 년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파문이 생겼다. 중국, 러시아, 아랍권 등이 ITU(국제전기통신연합)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ICANN 질서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ICANN이 사실상 미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으므로 국가간 연합체인 UN 산하기구에서 인터넷 주소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언뜻 상당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좀더 깊게 살펴보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인터넷에 관한 관리, 운용을 자율적인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로 할 것인지, 아

니면 정부나 정부간 국제기구 주도형의 위계형 거버넌스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종래 미국 정부의 인터넷 주소 감독권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다양한 쟁점이 있다.

세계의 양분 - 2013년 WCIT 서명

이러한 국제적 논쟁 가운데, 작년 12월 두바이 국제전기통신회의(WCIT)에서 국제통신규약(ITRs) 개정안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개정안에 대한 찬반으로 세계가 양분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듯 세계는 개정안에 대한 서명국(검정색)과 비서명국(빨강색)으로 나뉘었고, 우리는 중국, 러시아, 아랍권,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서명국에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전략상의 줄타기의 결과라고 하면서 미국일변도의 외교전략을 수정하는 계기라고 지지했고, 다른 분들은 우리가 인터넷 정책 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까지 비판했다.



▲ 2013. 12. WCIT회의의 서명국(검정색)과 비서명국(빨강색)

스노든 사건과 미국 정부의 인터넷 주소관리권 이양 선언

2013년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량감청을 폭로한 사건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인터넷에 관한 미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브라질 대통령은 2013년 10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인권침해와 주권국가에 대한 무례를 꾸짖으면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민간 차원의 다자간 협력체를 창설하자고 제안하였다. 그 결과 2014년 4월 세계인터넷거버넌스회의(일명, NETmundial 브라질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향후 인터넷 거버넌스의 중요한 원

칙과 실행방안들을 의논하여 발표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미국 정부는 브라질 회의 바로 전인 3월에 국제인터넷주소 관리권을 민간 국제 커뮤니티에 이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여러 회의를 통해 향후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ITU 전권회의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한국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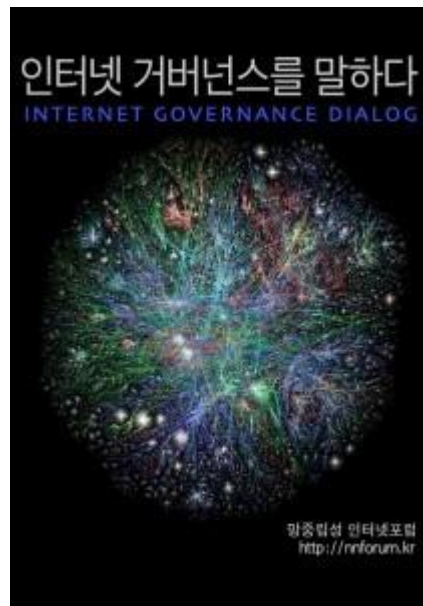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꾸준한 논의와 함께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2004년 이전까지는 민간 위주의 인터넷 정책기구(인터넷주소위원회)와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협력하여 인터넷을 운용하다가, 2004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에도 다양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2009년 인터넷발전협의회나 2012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등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민간부문(시민단체, 기업, 학계, 기술전문가 등)과 정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내 인터넷 정책을 의논하여 왔던 것이다. 최근에는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or.kr)를 새로이 발족하여 진정한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률적 의미에서의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이슈

법률적 의미에서의 '인터넷 거버넌스'는 2가지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각 관련 주제에 따라 적용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관련 법률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 인터넷도메인 이름,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보안, 콘텐츠 규제(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사항), 망중립성 등 주제에 따라 적용법규가 달라질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상당히 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각 이슈별로 적용 법률이나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다.

다음으로 국제적 측면에서 도메인 이름에서 .com 도메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문제나, 혹은 국외 서버에서 발생한 범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재판관할을 행사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있는 법률 분석과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터넷 자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동시에, 각국에서는 자국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주권행사 의지가 있어서 양자가 충돌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http://nnforum.kr/85>)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거버넌스를 말하다>라는 무료전자책(E-book)을 알라딘, YES24, T-store, 리디북스, BOOKCUBE 등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위 책 표지 링크에서는 무료 pdf 파일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말하다> 2부에서는 윤복남 변호사의 “한국 내 인터넷 거버넌스 형성과 인터넷주소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명특허칼럼

나카무라 슈지, 2번째 이야기



김준효 변호사

인류 역사에서 등은 전구에서 형광등, 그리고 LED 등의 순서로 발전해 왔다. 백색 LED 등의 구현을 위해서는 빛의 3원색인 적색, 녹색, 청색을 모두 구현해야 하는데, 그 중 청색의 구현은 20세기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할 정도로 난제였다. 나카무라 슈지가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공동수상한 것은 바로 이 청색 LED를 발명한 공적이다. 그런데 그는 이 발명에 대해 2001년에 자신이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화제를 모았다.

2004년에 선고된 1심은 피고 니치아화학공업에 대해 나카무라 슈지에게 200억 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카무라 슈지는 보상금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이었는데, 법원은 그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604억 엔임을 천명했다. 1심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계산한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1심의 직무발명보상금 계산 방법

1. 회사가 얻을 매출액의 합계액: 약 1조 2086억 엔
2. 독점으로 인한 매출액(회사의 원래의 실력에 의한 매출을 50%로 보고, 발명이 갖는 독점적 효력에 의한 매출을 50%로 보아, 위 '회사가 얻을 매출액의 합계액'의 50%를 계산): 약 6043억 엔
3. 실시료 수입(위 '독점으로 인한 매출액'에 20%의 실시료율을 곱한 액수): 1208억 엔
4. 인용가능 금액(위 '실시료 수입'에 발명자기여율을 50%로 정하여 곱한 금액): 604억 엔

1심 법원이 인정한 액수는 이례적으로 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대폭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서 이 사건이 몇 가지 점에서 독특하다고 지적했다. 첫째, 발명자가 회사의 연구 방향을 어기고 오히려 회사가 하지 말 것을 지시한 방향의 연구를 한 점이다. 이는 발명자 개인의 창의성을 높게 평가할 요인이 된다. 둘째로, 관련 분야의 기술의 축적이 회사에는 없었던 점을 들었다. '집단의 능력'보다 '1인의 천재'가 돋보이게 하는 요소였다. 물론, 회사가 발명으로 인해 얻을 장래의 이익도 매우 높게 평가하여 거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큰 충격을 받은 회사는 2심의 변론 과정에서 나카무라 슈지의 발명에 대한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등 기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색 LED 발명은 구체적으로는 "GaN 재료의 제법에 관한 발명"인데, 회사측은 아카사키 이사무 교수(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중 1인) 그룹이 나카무라 슈지의 발명에 의한 GaN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의 결정성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의 연구환경은 훌륭하였고, 청색 LED 개발에 대한 사장의 중 지명령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2005년의 2심은 『화해에 대한 당 법원의 견해』라는 화해권고문에 대하여 쌍방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나카무라 슈지가 위 소송에서 문제삼은 발명 1건을 포함한 총 195개 발명(나카무라 슈지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된 발명들)에 대한 보상금은 원금 6억엔, 이자 포함 8억 4000엔으로 결정되었는데, 1심보다 거의 1/100로 줄어든 금액이다. 1심의 실시료율 20%는 10%로 감축되었고, 발명자기여율 50%는 5%로 낮춰졌다. 회사가 2003년 이후에 얻을 이익에 대하여도 1심보다 낮게 평가했다. 법원은 화해권고안의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이 '종래에 1억 엔 이상 인정된 2개 사건(히다치제작소 사건 1억6516만엔, 아지노모토 사건 1억 9935만엔)의 금액을 기본으로 한 산정'이라 밝혔다.

이 직무발명보상금 사건에서 원고, 피고 간의 기본적 관점의 차이는 우수한 발명이 '1인의 천재'의 의한 것이냐 '집단의 능력'에 의한 것이냐다. 발명자는 '1인의 천재'에 방점을 두었고, 회사는 '집단의 능력'을 중시하였다. 회사는 2심의 화해를 받아들일 당시의 공식 발표문에서 '1인의 천재가 이룩한 것이 아니라는 점, 회사 내의 다른 젊은 기술자의 명예가 회복된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발명특허제도의 본질은 발명이 갖는 부가가치에 합당한 보상과 권리행사를 통한 산업발전 및 인류복지의 향상이라고 한다. 나카무라 슈지의 발명에 대하여는 일본 사법부가 1심과 2심에서 크게 다른 판단을 하였기에 발명이 갖는 부가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나 나카무라 슈지는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결정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발명의 가치를 크게 인정받았다.

법령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이지선 변호사

2014. 11. 29.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고, 이른바 스팸 메일이라고 불리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지 살펴본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그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는 구체적인 문구도 포함되었다(제23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 정보 수집이라는 원칙은 앞으로 더 엄격하게 해석될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안 때에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신고해서는 안 된다(제27조의3).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고처로 추가되었으며, 24시간을 경과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스팸 메일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정한 기간 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이라면, 예외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하였다면 전송할 수 없다(제50조).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하였다면 게시할 수 없다(제50조의7). 따라서 회원가입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만 접근이 가능한 게시판에 사전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면 안 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도 금지된다(제50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29조, 제73조 제1호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조항도 신설되었다(제32조의2).

마지막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도록 하였다(제58조).